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9
----------	-----

제출년월일 : 2006. 3. 20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함에 따라서 발주기관의 행정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여 지자체발주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체의 부담을 없애고자함.

2. 주요골자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별표1>을 일부개정하는 바 그 내용은 입찰참가신청서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입법예고 : '06. 2.15 ~ 3. 6 실시결과 제출의견 없음

다. 예산조치 : 추경시 2006년 세외수입 수수료수입 예산에 계상된
84,050천원은 정산 후 삭감조치

라.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마. 합의 및 협의 : 해당사항 없음.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증명)란의 12-1호 입찰참가신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별표1〉			
구 분	기준	수수료액	비고	구분	기준	수수료액	비고
12-1. 입찰참가신청				12-1. <삭제>			
입찰참가신청서	1건	10,000					

- 관 계 법 령 발 취 -

○ 지방자치법

제128조 [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감사원처분요구사항 통보내용

「기업불편사항 개선실태」에 대한 감사실시('04.10.18 - '04.11.26)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전자입찰참가에 따른 입찰참가수수료 징수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면서 발주기관의 행정비용 절감 등을 위해 도입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으로 입찰관련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일부지방자치단체가 입찰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입찰참가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관리과-310(2004. 7. 7)호의 내용

현재 대형건설업체가 참가하는 조달청 발주공사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으나 주로 중소기업업체가 참가하는 지자체발주공사 입찰참가자에게만 수수료를 징수하는 점에서 형평성을 기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입찰참가수수료 폐지 개선 재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시군에서는 입찰수수료징수 폐지 개선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